

교회 장소 이용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성명)	
이용목적	(추가 설명자료가 있는 경우 별지 첨부 요망)			
이용 일시	일회이용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요일 ____:____ ~ ____:____ (____시간)		
	정기이용	기간 : 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 요일 : 시간 :		
참석인원				
희망장소				
행사책임자	(연락처)			
이용신청자	(연락처)			
교회관계자	(연락처)			
기타사항	음향 사용 여부 : 영상 사용 여부 : 기타 필요 사항 :			

교회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첨부)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교회 장소 이용을 신청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자 : _____ (서명)

서초신동교회 귀중

교회 외부기관 등의 교회장소 이용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부기관(단체) 등의 교회내의 장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소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 교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1항. 교회의 장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조직, 모임 (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모임은 장소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1. 상업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모임
2. 비기독교적 성향의 모임
3. 사적인 친교 등의 모임
4.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교회 자체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신청하는 이용자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장소 이용 시 교회 이용자는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3항. 장소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유지관리 및 최소한의 소요비용을 이용자가 교회에 헌금할 수 있다.

4항. 교회는 외부기관 이용자의 식사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3조(이용기간) 장소이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함으로써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 장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1항. 일시이용은 단회에 한하여 관리위원장의 승인으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2항. 정기이용은 주 또는 월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1. 이용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회 심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배실(1층, 2층, 4층), 조이홀(5층), 교회식당 및 주방,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배정)

1항.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최소한 이용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장소 배정은 신청서에 의거 교회 당회 심의를 거친 후 배정된다.

단, 타 교단이나 성격이 불분명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장소사용 신청을 한 경우 당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3항. 정기 이용을 승인의 경우 교회는 이 사실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지한다.

제5조(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 금지)

1항. 교회 집기비품의 이동 및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항. 이용자가 집회(행사)와 관련된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항. 이용 장소에 설치된 비품 이외의 추가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교회가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1항. 이용자는 교회내에서 경건성을 유지해야 하며, 교회의 시설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소 사용 후에는 시설물이 원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냉난방기 등 전원기구의 스위치를 반드시 끄고 주변 정리정돈을 마친 후 교회관리자에게 이용 종료상황을 알린 후 퇴실해야 한다.

2항. 이용자는 행사와 관련된 이용자 우편(택배)물의 수취 책임을 교회에 부여하지 않는다.

3항. 이용자는 행사와 관련된 전화 등의 응대와 안내 책임을 교회에 부여하지 않는다.

4항. 장소 이용에 있어 교회 자체 행사와 중복 또는 소리의 간섭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교회 행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5항.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회는 행사를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항. 장소 이용 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 측

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7항. 이용자측의 장소사용으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이용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8항. 이용자가 행사 참가자에게 참가비 또는 등록비 등을 받을 경우 이용자는 장소 이용 신청서 제출시 사전에 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중지) 장소 이용 중에 당초 이용목적에 위반되거나 교회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교회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2회 이상 지적을 받게 되면 이용을 즉시 중지시킬 수가 있다.

제8조(녹화 및 자료제작 등)

1항. 이용자가 공연이나 행사를 녹화할 경우 사전에 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 이용자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한 PPT 제작 및 기계 조작 등의 역할을 교회에 부여하지 않는다.

3. 공연이나 행사를 위한 언론(방송, 신문 등) 취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효력) 본 규칙은 장소 이용에 관한 이용자와 교회 상호간의 아래 계약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년 월 일

상기 규칙을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 표 :